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3년 09월 02일  
(월요일)

## 강북신문 7면

박문수 의원, 강북구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 밝혀

### “주민편의 제약, 명확한 법규 있어야”

“상황에 따른 어쩔수 없는 규제는 최소로 하는 게 진정 구민을 위한 것 아닌가.”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8월30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강북구가 발표한 ‘광고물 경유제’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이같은 제도가 주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하는 규제라며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신규업소의 인허가조차 광고물경유제로 인해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 광고물에 대한 인가를 받은 뒤 영업인가를 해준다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부서별 인허가 건수가 많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가 미아역에 있고 보건위생과 의약과 등은 번동에 있어 광고물경유를 위해 다시 수유동에 있는 구청에 들러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박문수 의원은 “그렇다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근거가 뭔지 살펴보니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등



박문수 의원

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법해석 문제를 밝힌 것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경우 사전심사를 말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뒤 “민원의 편의를 위한 조항을 민원의 편의를 제약하는 조항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광고물 경유제’의 집행부 판단을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원룸 건축시 소규모 공동주택 심의기준안에 따라 △20m이상 대로변 접할 것 △1개동에 전용면적 45㎡이상 세대들 3분의2이상 확보할 것 등의 심의기준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심의기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근거인 것 같다”라며 “그러나 공무원의 집행은 법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뜻이 좋다해도 집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있어야 한다”

## 동북일보 2면

### 議政發言臺

## 광고물경유제 시행 조례 규정 해석에 문제 있어

박문수 의원(민주당/ 번3동, 송중동, 미아동)

박문수 의원은 “구민을 위해서는 규제의 확산이 아닌 규제를 축소하고 법규가 있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도 규제를 최소화하지 않고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강북구가 9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광고물경유제에 대해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광고물경유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광고물 관리팀을 경유할 것을 안내하고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상담 후 신청서에 광고물 경유 확인 필을 날인하고 인·허가부서에서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업소의 인·허가 시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야만 영업인가를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2년도 인·허가 건수를 예를 들며 안전교통건설과와 보건소의 건수가 가장 많은데 이 제도대로 한다면 안전교통건설국은 미아동에, 보건소는 번2동에, 구청은 수유동에 있어 부서간 이동거리가 멀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확인을 받아야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면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구민에게 새로운 부담이나 권리제한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필요하고 집행은 법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서울시조례에 따라 규제를 했다면 “민원사무처리원칙에 의해 법령규정에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강화해

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조례 조항은 민원심사를 위한 사전심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민원인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규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구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준 도시관리국장은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